

법원 공보

2025. 08. 01.
제 1717 호



법원행정처

목차

- **예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 | 993
-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997
-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1001

- **신법령 목록** | 1003

- **공고** | 1008

■ 예규

◎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37호 2025. 7. 18.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다목 2)가) 중 “영장재판부”를 “영장사건 전담재판부”로 하고, 같은 목 2)다) 중 “형사재판부”를 “형사재판부(본안사건 담당 재판부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목 3)나) 중 “법원장 및 지원장, 전담법관”을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 및 지원장, 전담법관, 원로법관, 전임 시·군법원 판사”로 하고, 같은 목 4)가) 중 “소속기관의 장(대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다목 4)나) 중 “영장재판부”를 “영장사건 전담재판부”로 하고, 같은 목 4)다) 중 “영장재판부”를 각각 “영장사건 전담재판부”로 하며, 같은 목 3)가)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다목 3)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 비중 등을 고려하여 소속 법관에게 가산금을 지급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9의 제6호 중 1)의 재판업무수당과 중요직무급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1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4조(특수업무수당)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별 업무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재판수당: 규칙 별표 9의 제4호

가. · 나. (생 략)

다. 가산금

1) (생 략)

2) 지급대상

가) 고등법원(특허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법원에서 동일한 사무분담에 3년 차 이상(영장재판부는 2년 차 이상) 보임하는 재판장(지방대등재판부 포함)

나) (생 략)

다) 고등법원에서 동일한 형사재판부에 2년 차 이상 보임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라) · 마) (생 략)

3) 지급제외

가) 동일한 사무분담의 각 년 차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지급요건 중 해당 년 차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후단 신설>

개 정 안

제14조(특수업무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1) (현행과 같음)

2) -----

가) -----

-----영장사건 전담재판부-----

나) (현행과 같음)

다) ----- 형사재판부(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라) · 마) (현행과 같음)

3) -----

가) -----

-----, 이 경우 재직기간을 계산

현행

나) 법원장 및 지원장, 전담법관은 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4) 법관의 직무정도 결정

가) 소속기관의 장(대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관에게 재판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직무정도를 매년 법관 정기인사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가정법원) 지원 이하 소속 법관의 직무정도는 관할 지방법원의 장이 정한다.

나) 직무정도는 법관 직무의 내용·곤란도, 책임의 정도,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가. 등급’ 과 ‘나. 등급’ 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형사재판부 또는 영장재판부는 ‘가. 등급’ 으로 분류한다.

다) ‘가. 등급’은 법원별 지급인원의 50%를 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이 되는 형사재판부 또는 영장재판부가 법원별 지급인원의 50%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형사재판부 또는 영장재판부는 ‘가. 등급’으로 분류한다.

개정안

하기 위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한다.

나)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 및 지원장, 전담법관, 원로법관, 전임 시·군법원 판사는-----.

다)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 비중 등을 고려하여 소속 법관에게 가산금을 지급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

가) 소속기관의 장-----

-----.

나) -----

----- 영장사건 전담재판부-----
-----.

다) -----

----- 영장사건 전담 재판부-----
----- 영장사건 전담재판부-----.

현행

라)·마) (생략)

5) (생략)

5. ~ 12. (생략)

제18조(수당의 병급 문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개정안

라)·마)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5. ~ 12. (현행과 같음)

제18조(수당의 병급 문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별표 9의 제6호 중 1)의 재판업무수당과 중
요직무급

◎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행정예규 제1438호 2025. 7. 18. 결재)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된 심의 요청 및 의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및 대상)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각급 법원 및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에 한하여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법원의 심의 요청 및 반려) ① 법원의 장은 해당 법원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탁하려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첨부하여 의견서와 함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장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2항제1호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함이 없이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 및 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전월 말일까지 심의 요청된 기부금품 접수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당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탁 배경, 사법행정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법원의 행정 여건, 예산 사정, 대체 수단의 유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탁하려는 자와 법원의 특별 이해관계 여부 및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의견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의결 결과 통보)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에 관한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법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법원의 기부금품 접수방법 등) ① 법원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접수증 2부를 작성하여 기탁자와 법원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기탁자가 기부금품 접수증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탁자에게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이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법원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지정기탁서

기탁금품 접수 기관의 장 귀하

■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기부금품 접수증

① 기탁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② 기부내용

연 번	구 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위와 같이 기부금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품 수령인

○○○○○ 법원(지원)장 (직인)

◎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39호 2025. 7. 22. 결재)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담당)실, 정보화심의관(담당)실, 관리운영담당관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정보보호담당관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제한대상자나 소속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증빙을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조치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각한 날부터 10일
2.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요구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 사무분담의 변경 또는 전보일로부터 10일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제한대상자나 소속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증빙을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조치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매각한 날부터 10일
2. 제2항제2호의 경우: 사무분담의 변경 또는 전보일로부터 10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대상자는 제5조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3조(주식취득의 제한) ①(생 략)

1. (생 략)
2.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담당)실, 정보화심의관(담당)실, 관리운영담당관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정보보호담당관실,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추진단

3. ~ 12. (생 략)

②(생 략)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등) ① · ②(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제한대상자나 소속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조치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 ②(생 략)

③ 제2항의 요구 등을 받은 제한대상자나 소속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 등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조치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생 략)

개 정

제3조(주식취득의 제한)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담당)실, 정보화심의관(담당)실, 관리운영담당관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정보보호담당관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3. ~ 12.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제한대상자나 소속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증빙을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조치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각한 날부터 10일

2.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요구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 사무분담의 변경 또는 전보일로부터 10일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제한대상자나 소속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증빙을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조치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매각한 날부터 10일

2. 제2항제2호의 경우: 사무분담의 변경 또는 전보일로부터 10일

④(현행과 같음)

신법령 목록 (2025. 7. 1. ~ 2025. 7. 15.)

조약

조약제2611호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21025	2025. 07. 01.	4
조약제2612호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	21029	2025. 07. 07.	4
조약제2613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21035	2025. 07. 15.	3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5619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025	2025. 07. 01.	11
대통령령제3562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3562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35622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3562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3
대통령령제35624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35625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3
대통령령제3562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6

대통령령제35627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1025	2025. 07. 01.	38
대통령령제3562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0
대통령령제35629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7
대통령령제35630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0
대통령령제35631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2
대통령령제35632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029	2025. 07. 07.	44
대통령령제35633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7
대통령령제35634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0
대통령령제35635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6
대통령령제35636호	공무원연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8
대통령령제35637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2
대통령령제35638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	"	64
대통령령제35639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68
대통령령제3564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	"	71
대통령령제35641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	"	75
대통령령제3564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79
대통령령제35643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1030	2025. 07. 08.	4
대통령령제3564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3564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35646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030	2025. 07. 08.	12
대통령령제35647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35648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35649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35650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1035	2025. 07. 15.	12
대통령령제35651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35652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35653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35654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
대통령령제35655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2
대통령령제35656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5

부령

고용노동부령제44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25	2025. 07. 01.	54
고용노동부령제44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51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3
국방부령제1179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5

농림축산식품부령제725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25	2025. 07. 01.	80
법무부령제110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2
보건복지부령제112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6
행정안전부령제56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0
해양수산부령제741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26	2025. 07. 02.	3
중소벤처기업부령제100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27	2025. 07. 03.	3
행정안전부령제568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기획재정부령제113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28	2025. 07. 04.	4
기획재정부령제113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
기획재정부령제113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4
기획재정부령제1137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37
산업통상자원부령제607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37
국방부령제1180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29	2025. 07. 07.	83
국방부령제118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7
보건복지부령제112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112
보건복지부령제1121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0
환경부령제118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4
해양수산부령제74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30	2025. 07. 08.	21
해양수산부령제743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23

행정안전부령제56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30	2025. 07. 08.	26
행정안전부령제571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8
행정안전부령제58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9
해양수산부령제745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32	2025. 07. 10.	3
국가보훈부령제5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33	2025. 07. 11.	4
국가보훈부령제5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국가보훈부령제53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
국가보훈부령제54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8
국가보훈부령제5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5
국가보훈부령제56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3
기획재정부령제1129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	51
산업통상자원부령제60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5
산업통상자원부령제609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6
산업통상자원부령제610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0
중소벤처기업부령제10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1
해양수산부령제744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4
교육부령제36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35	2025. 07. 15.	38

공고

관인등록 공고

법원사무관리규칙 제40조, 동 시행내규 제56조에 의하여 의정부
지방법원의 관인을 별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4.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장



[별지 제23호서식]

관 인 대 장

관 인 명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법원사무관인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관리부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교 부 · 재 교 부 관 인	(인 영) 	등 록 일	2025년 7월 14일		
		새 긴 날	2025년 7월 11일		
		새 긴 사 람	주 소 : 서울 [redacted] 성 명 : 윤인자(상호: 롯데문구) 사업자등록번호 [redacted]		
		최초사용일	2025년 7월 14일		
		재 료	회양목		
		교 부 사 유	법률 제15248호(2017. 12. 19.) 공포에 의거		
		법 원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인 영 번 호	2025-4		
		폐 기 관 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 마멸 ☐ 분실 ☐ 기타()				
폐 기 방 법	☐ 소각 ☐ 이관 ☐ 기타()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법 원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210mm × 297mm 한지

[별지 제23호서식]

관 인 대 장

관 인 명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원주사보인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관리부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총무과	
교 부 · 재 교 부 관 인	(인 영) 	등 록 일	2025년 7월 14일	
		새 긴 날	2025년 7월 11일	
		새 긴 사 람	주 소 : 서울 [redacted] 성 명 : 윤인자(상호: 롯데문구) 사업자등록번호 : [redacted]	
		최초사용일	2025년 7월 14일	
		제 료	회양목	
		교 부 사 유	법률 제15248호(2017. 12. 19.) 공포에 의거	
		법 원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인 영 번 호	2025-2	
		폐 기 관 인	(인 영)	등 록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 마멸 ☐ 분실 ☐ 기타()			
폐 기 방 법	☐ 소각 ☐ 이관 ☐ 기타()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법 원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210mm × 297mm 한지

[별지 제23호서식]

관 인 대 장

관 인 명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원주사보인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관리부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총무과		
교 부 · 재 교 부 관 인	(인 영) 	등 록 일	2025년 7월 14일		
		새 긴 날	2025년 7월 11일		
		새 긴 사 람	주 소 : 서울 () 동) 성 명 : 윤인자(상호: 롯데문구) 사업자등록번호 : ()		
		최초사용일	2025년 7월 14일		
		재 료	회양목		
		교 부 사 유	법률 제15248호(2017. 12. 19.) 공포에 의거		
		법 원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인 영 번 호	2025 - 1		
		폐 기 관 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 마멸 ☐ 분실 ☐ 기타()				
폐 기 방 법	☐ 소각 ☐ 이관 ☐ 기타()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법 원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210mm × 297mm 한지



2025.08.01.제 1717 호
Supreme Court of Korea



9 772951 225009
ISSN 2951-2255